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
(주야간보호)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8호
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 급	
			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60% ☐ 40% 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고창군노인복지센터	시설종류	주야간보호. 방문요양.방문목욕
	시설장 성명	손 형 석	연락처	063-562-1102 063-564-7711
	주 소	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-15		
대리인또 는 보호 자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□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□ 부터□ 까지로 한다.□
-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□

제3조(급여범위)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 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□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□
- ② ‘갑’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 다만, 이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□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.□

이용요일	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□ 토 □ 일				
이용시간	오전		부터	오후	

※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□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함.□

요일	시간	비고
	~	주중공휴일 제공 명절공휴일 휴관

- ④ ‘을’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을’)과 협의하여 당월 14일까지□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.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

제5조(계약자 의무)□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□
 - 1. 월 이용료 납부의무
 - 2.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
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□
 - 4.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□
 - 2. 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□
 - 3. ‘갑’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‘갑’(또는 ‘병’)□ 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□

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□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□
5. '갑'의 식사제공, 이용상담, 이용편의 제공□
6. '갑'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□
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□
8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□
9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□
- 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□
 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□
 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□
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□
 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□
 5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□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□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□
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□
 2.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□
 3.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□
- ② '을'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□
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2. '갑'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□
 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
경우로 판정될 때□
 4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□
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□
지장을 줄 때□
 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□

제7조(계약의 해지)□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□
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□
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□
- ② '을'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□
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□
- ③ '갑'(또는 '병')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'갑'의 개인□
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을'은 등기,택배 □

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'갑'(또는 '병')에게 송달처리 한다.□

제8조(미이용 비용산정)□

- ① '을'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'갑'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□
-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 ~ 금요일)기준으로 한다.□

제9조(이용료 납부)

-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□
-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□
- ③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'갑' (또는 '병')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 □
- ④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(농협: 351-0665-9578-43)로 25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.□
- ⑤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□

제10조(재계약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- 3.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- 4. 기타 '갑'과 '을'이 필요한 경우

제11조(개인물품)□

- ① '갑'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'갑'이 구비하여야 한다.□
- ② '을'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□

제12조(시설관리)□

- ① '을'은 '갑' 또는 '병'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□
- ②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□ 기해야 한다. □

제13조(건강관리)□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□
- ② '갑'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'병'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□ 취하여야 한다.□
- ③ '병'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□
- ④ '을'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'갑'에게 적절한 조치를 □ 취해야 한다. □

제14조(시설물 배상)□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□
대하여는 '갑'(또는 '병')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□
- ② '갑'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□
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□

제15조(위급 시 조치)□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□
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□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□
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□
- ③ '갑'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'을'은 즉시 '병'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□
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□

제16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'갑'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□
- ②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□
- ③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□
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□
- ④ '을'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□
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□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□

제17조(기록 및 공개)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
히 기록하고, '갑'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□

제18조(배상책임)□

- ① '을'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□
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□
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□
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□
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□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□
 4.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□
이르게 하였을 때□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□
 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□
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□

-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□
- 4. '갑'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□

제19조(기타)□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□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□
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□

**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□
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 □**

년 월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□

'을' 고창군노인복지센터장

손 형 석

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□

'갑' 이용자

(인)

'병' 대리인(보호자)

(인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이용자 :

생년월일 :

년 월 일

주 소 :

1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및 이용목적

- ☐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☐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☐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2. 수집대상정보

- ☐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☐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☐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5년간 보존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함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용 자 :

(서명)

또는 대 리 인 (보호자 등):

(서명)

고창군노인복지센터 귀중

[별표 1]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1.01.01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□

구 분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2,850	30,330	28,940	27,56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44,060	40,670	39,290	37,89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54,810	50,600	49,220	47,820
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60,380	55,780	54,370	52,990
12시간 이상	64,750	59,810	58,430	57,04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
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□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□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6% / 9%

[별표 2]□

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- 1) 기본원칙 :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□
이. 미용비이며,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.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□
- 2) 세부기준□
 - 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□
 - (2) 이. 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□
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□
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□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□

- 1) 기본원칙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□
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□
을 수납하지 못함□
- 2) 세부기준□
 - (1)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: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□
납 가능,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□
토록 함□
 - (2)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: 일률적으로 제□
공되는 일상용품(휴지, 비누, 수건, 실내화 등)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□
 - (3) 각종 프로그램 비용 :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□
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.□
단,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□
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□